■ 건설업관리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2018.6.26.> <시행 2018.6.26.>

진단자 소속협회 경 유

재 무 관 리 상 태 진 단 보 고 서

진 단 구 분	1. 신규등록 2. 기타 ( )		
상 호		대 표 자	
소 재 지		전 화 번 호	
진 단 기 준 일	년 월 일		

구분	등록업종 종류	등록기준자본	평정후실질자본	진 단 의 견
기존		원	-	-
		원		
		원		
신규 (신고등)		원	원	
계		원	원	-

* 진단내역

과 목	금 액	과 목	금 액	겸 업 내 용
회사제시자산총계(i)		회사제시부채총계(iv)		
자 산 증 가(ii)		부 채 증 가(v)		
자 산 감 소(iii)		부 채 감 소(vi)		
실 질 자 산(Ⅰ) (i)+(ii)-(iii)		실 질 부 채(Ⅱ) (iv)+(v)-(vi)		
겸 업 자 산(vii)		겸 업 부 채(viii)		
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(Ⅲ) (Ⅰ) - (vii)		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(Ⅳ) (Ⅱ) - (viii)		
진단대상사업실질자본(Ⅴ) (Ⅲ) - (Ⅳ)				

상기의 실질자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거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* 진단자

・진단자 상호・명칭(대표자) :

・사무소소재지 : (Tel : , Fax :)

・담당공인회계사(세무사, 경영지도사) : 등록번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・(진단자)법인등록번호 : 사업자등록번호 :

※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우 고용된 공인회계사・세무사・경영지도사 모두 기재・날인한다.

(제출기관)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